



산업안전보건법 개/정/안/내



법의 보호대상 확대

: 근로자 → 노무를 제공하는 자(특수형태근로종사자 9개 직종 및 배달종사자 포함)로 확대

특수형태
근로종사자

보험모집원, **건설기계 운전사(27종)***, 학습지 교사, **골프장 캐디***, **택배원***, **퀵서비스기사***,
대출모집인, 신용카드회원 모집인, **대리운전기사*** *5개 직종 의무교육 대상



산업재해예방 책임주체 확대

-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주식회사 또는 시공능력 상위 1,000위 이내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·승인(1천만 원 이하 과태료)
-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발주자는 단계별(계획, 설계, 시공) 안전보건대장 작성·이행 확인(1천만 원 과태료)
- 가맹점 수가 200개 이상인 **외식업**, **편의점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**는 안전보건프로그램 마련·시행 등 안전보건조치 실시(3천만 원 이하 과태료)



유해위험작업의 사내도급 제한(10억 원 이하 과징금)

- 도급작업, 수은·납·카드뮴의 제련·주입·가공·가열작업, 허가대상물질 제조·사용하는 작업의 **사내도급 금지**
- 중량비율 1% 이상의 황산, 불화수소, 질산, 염화수소 취급설비 개조·분해·해체·철거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의 작업은 **고용노동부 장관 승인대상**(단, 승인작업의 하도급 금지)



도급인의 책임범위 및 처벌수준 강화

-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범위 확대
[기존] 도급인 사업장 내 22개소 → [개정] 도급인 **사업장 내 전체** 및 사업장 외 도급인이 **지배·관리하는 21개소**
-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시 처벌수준 상향
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강화 ② 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신설



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

- 건설업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조정자 **선임대상 확대**

건설업 안전관리자 [기존] 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 → [개정]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

건설업 안전보건조정자 [기존] 전기공사·정보통신공사와 그 밖의 건설공사 혼재 시 → [개정] 2개 이상의 건설공사 혼재 시

- 타워크레인 설치·해체업 등록제 신설 : **등록한 자만** 타워크레인 설치·해체 작업 가능(1천만 원 이하 과태료)



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(500만 원 이하 과태료)

-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 대상물질 **제조·수입하려는 자**는 MSDS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
※타법에 의해 정보 제공하는 경우 작성·제출 제외
- 화학물질의 **명칭과 함유량을 비공개**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**사전승인**(단,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 기재)



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시 처벌수준 강화

- 5년 내 동일한 죄로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 또는 도급인은 **형의 1/2까지 가중처벌**(사망 시 처벌기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)
- 법인에 대한 벌금형 **10억 원으로 상향**
- 사업주 또는 도급인이 근로자 사망으로 유죄판결 선고 또는 약식명령 고지 시 **200시간 내 수강명령** 병과 가능

법령
시행시기

2020. 1. 16.

[예외] •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규정 : 2021. 1. 1.
• 물질안전보건자료 규정 : 2021. 1. 16.